의안번호	제615호
의 결 연 월 일	2014년 2월 18일 (제327회)

충청북도 시·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4년 2월 14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시·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615

제출연월일 : 2014년 2월 14일
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1. 제안사유

○ 지난 2. 13일 공적선거법이 일부 개정 공포되고, 시군의 읍면동 명칭 변경 등 시·군의원 지역선거구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

○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시·군의원지역선거구를 재획정

2. 주요내용

○ 시·군의회 의원 정수 : 131명(현행과 같음)

구분	계	청주	충주	제천	청원	보은	옥천	영동	증평	진천	괴산	음성	단양
계	131	26	19	13	12	8	8	8	7	7	8	8	7
비례	17	3	2	2	2	1	1	1	1	1	1	1	1
지역	114	23	17	11	10	7	7	7	6	6	7	7	6

○ 시·군의원 지역구의 명칭·구역 및 의원정수(별표 2)

- 읍면동 명칭변경 : 6개지역선거구 8개읍면동
- 도의원지역구 변경에 따른 시·군의원 지역구 조정
  · 청주시 '우암동'을 '가' → '나'선거구, 영동군 '학산면'을 '가' → '나'선거구
- 증평군 '가'선거구 → 2개로 분할('가', '나'선거구) * 기존 '나' → '다'선거구
- 영동군 '용화면'을 '다'→'나'선거구

※ 타 지역선거구는 변동사항 없음

3. 의안전문 : 붙 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 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 임

충청북도조례 제　　호

충청북도 시·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시·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같은 법 부칙 제4조3항, 「공직선거관리규칙」 부칙 제3조에 따른”을 “같은 법 부칙 제5조3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의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에 선출된 의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[별표 2]

시·군의원 지역구의 명칭·구역 및 의원정수

구 분	지역구명칭	지역구 선출의 원정수	선거구역	읍·면·동수
충청북도	합계	114	47개 선거구	153
청주시	소계	23	9개 선거구	30
	청주시 "가"선거구	3	내덕제1동, 내덕제2동, 율량·사천동, 오근장동	4
	청주시 "나"선거구	3	**우암동**, 중앙동, 성안동, 탑·대성동, 금천동, 용담·명암·산성동	6
	청주시 "다"선거구	3	용암제1동, 용암제2동, 영운동	3
	청주시 "라"선거구	3	모충동, 사직제1동, 사직제2동, 수곡제1동, 수곡제2동	5
	청주시 "마"선거구	2	분평동, 산남동	2
	청주시 "바"선거구	2	사창동, 성화·개신·죽림동	2
	청주시 "사"선거구	2	복대제1동, 복대제2동	2
	청주시 "아"선거구	3	가경동, 강서제1동	2
	청주시 "자"선거구	2	강서제2동, 봉명제1동, 봉명제2·송정동, 운천·신봉동	4

구 분	지역구명칭	지역구 선출의 원정수	선거구역	읍·면·동수
충주시	**소계**	17	**7개 선거구**	25
	충주시 “가”선거구	2	앙성면, 노은면, **중앙탑면**, 신니면	4
	충주시 “나”선거구	2	주덕읍, **대소원면**, 살미면, 수안보면	4
	충주시 “다”선거구	3	달천동, 호암·직동, 지현동, 용산동	4
	충주시 “라”선거구	2	엄정면, 산척면, 동량면, 금가면, 소태면	5
	충주시 “마”선거구	2	목행·용탄동, 칠금·금능동	2
	충주시 “바”선거구	2	봉방동, 문화동, 성내·충인동	3
	충주시 “사”선거구	4	연수동, 교현·안림동, 교현2동	3
제천시	**소계**	11	**5개 선거구**	17
	제천시 “가”선거구	2	봉양읍, 백운면, 송학면	3
	제천시 “나”선거구	2	**의암동**, 청전동	2
	제천시 “다”선거구	2	**인성동**, 용두동, **영서동**	3
	제천시 “라”선거구	2	금성면, 청풍면, 수산면, 덕산면, 한수면, 화산동	6
	제천시 “마”선거구	3	교동, **남현동**, **신백동**	3

구 분	지역구명칭	지역구 선출의 원정수	선거구역	읍·면·동수
청원군	**소계**	10	**4개 선거구**	13
	청원군 “가”선거구	2	낭성면, 미원면, 가덕면, 남일면, 문의면	5
	청원군 “나”선거구	3	남이면, 현도면, 강내면, **오송읍**	4
	청원군 “다”선거구	2	내수읍, 북이면	2
	청원군 “라”선거구	3	오창읍, 옥산면	2
보은군	**소계**	7	**3개 선거구**	11
	보은군 “가”선거구	2	보은읍	1
	보은군 “나”선거구	2	속리산면, 장안면, 마로면, 탄부면	4
	보은군 “다”선거구	3	삼승면, 수한면, 회남면, 회인면, 내북면, 산외면	6
옥천군	**소계**	7	**3개 선거구**	9
	옥천군 “가”선거구	3	옥천읍	1
	옥천군 “나”선거구	2	동이면, 이원면, 군서면, 군북면	4
	옥천군 “다”선거구	2	안남면, 안내면, 청성면, 청산면	4

구 분	지역구명칭	지역구 선출의 원정수	선거구역	읍·면·동수
영동군	**소계**	**7**	**3개 선거구**	**11**
	영동군 “가”선거구	3	영동읍, 양강면	2
	영동군 “나”선거구	2	용산면, 심천면, 양산면 **학산면, 용화면**	5
	영동군 “다”선거구	2	황간면, 추풍령면, 매곡면, 상촌면	4
증평군	**소계**	**6**	**3개 선거구**	**2**
	증평군 “가”선거구	2	증평읍(창동리, 중동리, 교동리, 초중리,대동리, 증평리, 신동리)	1
	증평군 “나”선거구	2	증평읍(내성리, 증천리, 남하리, 용강리, 죽리, 덕상리, 남차리, 율리, 장동리)	
	증평군 “다”선거구	2	도안면 (증평읍 연탄리, 송산리, 미암리, 사곡리 포함)	1
진천군	**소계**	**6**	**2개 선거구**	**7**
	진천군 “가”선거구	3	진천읍, 문백면, 백곡면	3
	진천군 “나”선거구	3	덕산면, 초평면, 이월면, 광혜원면	4
괴산군	**소계**	**7**	**3개 선거구**	**11**
	괴산군 “가”선거구	3	괴산읍, 칠성면, 소수면, 문광면	4

구 분	지역구명칭	지역구 선출의 원정수	선거구역	읍·면·동수
	괴산군 “나”선거구	2	감물면, 장연면, 연풍면, 불정면	4
	괴산군 “다”선거구	2	청천면, 청안면, 사리면	3
음성군	**소계**	**7**	**3개 선거구**	**9**
	음성군 “가”선거구	3	음성읍, 소이면, 원남면, 맹동면	4
	음성군 “나”선거구	2	금왕읍, 생극면, 감곡면	3
	음성군 “다”선거구	2	대소면, 삼성면	2
단양군	**소계**	**6**	**2개 선거구**	**8**
	단양군 “가”선거구	3	단양읍, 대강면, 적성면, 단성면	4
	단양군 “나”선거구	3	매포읍, 가곡면, 영춘면, 어상천면	4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 (생략)	제1조 (현행과 같음)
제2조 (생략)	제2조 (현행과 같음)
제3조(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·구역 및 의원정수) 「공직선거법」 제26조제2항, 같은 법 부칙 제4조3항, 「공직선거관리규칙」 부칙 제3조에 따른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·구역 및 의원정수를 별표 2와 같이 한다.	제3조(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·구역 및 의원정수) 「공직선거법」 제26조제2항, 같은 법 부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·구역 및 의원정수를 별표 2와 같이 한다.

관련법령 발췌

【 공직선거법 】

제23조(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의원정수) ①시도별 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의 총정수는 별표3과 같이하며, 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당해 시·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제24조(선거구획정위원회)의 규정에 따른 당해 시·도의 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·시·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.

②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한다.

③비례대표 자치구·시·군의원정수는 100분의 10으로 한다. 이 경우 단수는 1로본다.

제24조(선거구획정위원회) ①국회의원지역선거구와 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선거구(이하 "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"라 한다)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국회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, 시·도에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각각 둔다.

② "생 략"(국회의원선거구획정 관련)

③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학계·법조계·언론계·시민단체와 시·도의회 및 시·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시·도지사가 위촉하여야 한다.

④국회의원·지방의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및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(이하 "선거구획정위원회"라 한다)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
⑤생략

⑥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선거구획정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⑦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5조제1항 및 제26제2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

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고, 그 이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당해 국회의원 또는 자치구·시·군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전 6월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,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⑧ 생 략(국회의원선거구획정 관련)

⑨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당해 자치구·시·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
⑩국회가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거나, 시·도의회가 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.

⑪생략

제26조(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) ①생략(시·도의원선거구획정 관련)

②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는 인구·행정구역·지세·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, 하나의 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, 그 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의 명칭·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·도 조례로 정한다

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·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를 획정하는 경우 하나의 읍·면·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시·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.

④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·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하며, 하나의 시·도의원지역구에서 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.

부 칙

제5조(자치구·시·군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) ①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4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안을 이 법 시행

일 후 5일까지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시·도의회는 이 법 시행일 후 12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.

② 시·도의회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의 명칭·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.

③ 제2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선거구별 의원 1명당 인구수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치구·시·군은 읍·면·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에 속하도록 할 수 있다.

제6조(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특례)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자치구·시의 지역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60조의2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후 17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.

【 공직선거법시행령 】

제2조(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) ①「공직선거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4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·광역시·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에 두는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시·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, 시·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, 학계·법조계·언론계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각각 2인을 위촉하고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②~③생략

④위원회는 시·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~⑨생략

【 공직선거관리규칙 】

제4조(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기준) ①법 제23조(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의원정수)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의원정수의 산정

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.

1. 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법 별표 3의 시·도별 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의 총정수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·시·군별 인구 비율과 읍·면·동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. 이 경우 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 및 읍·면·동수의 기준일은 최근의 통계에 따라 법 제24조(선거구획정위원회)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당 시·도의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다.
2.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(이하 "비례대표자치구·시·군의원"이라 한다)정수는 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의원정수에서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먼저 정하고, 지역선거구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(이하 "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원"이라 한다)정수는 그 나머지 인원으로 한다.

②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원정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자치구·시·군 안에서 지역선거구별로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